##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## 1. 의결주문

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개정이유

민법에 따른 절차 규정 등을 일부 신설하고,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비하거나 중복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,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편의성을 확보하여 가사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재판장 등이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등을 촉탁하는 것과 촉탁받은 가 정법원의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의2 신설)
-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다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 의2제3항 신설)
-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마련함(안 제12조의3 신설)
-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나 재산관리 가능 여부를 조사 하고,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것을 명할 근거

를 둠(안 제49조의2 신설)

-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한 때에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0조)
- 입양사건 심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의사나 심리검사전문가에 의한 심리 검사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62조)
-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미성년자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실 시하거나 입양기관,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2조의9 신설)
-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을 미성년 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함(안 제120조의3 및 제120조의7)
- 미성년자 인도 의무, 면접교섭 허용 의무, 양육비 지급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하고, 그 외의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을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함(안 제121조)

## 4.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 5. 신·구조문 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) ① 재판장, 조정장,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촉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촉탁을 받은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촉탁받은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다른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전문가 등의 자문)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·심리학자·아동학자, 그 밖의 관련 전문 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제23조 제2항의 "사실조사 또는 증거조사"를 "증거조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3

항을 삭제한다.

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2(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) ①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생사 여부,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.

②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제50조 중 "실종선고가 있는 때"를 "실종선고가 있는 때 또는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한 때"로 한다.

제62조의 제목 "입양허가의 절차 등"을 "심리검사의 촉탁"으로 하고, 같은 조제3항, 제4항, 제5항을 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재판장 또는 가사조사관은 입양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, 심리검사전문가 등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심리검사를 촉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심리검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 제116 조, 「민사소송규칙」 제19조, 제20조의 규정을,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 와 액 및 그 지급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비용법」 및 「민사소송비용규칙」 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.

제62조의8제2항 중 "제62조제1항 각 호"를 "법 제45조의8제1항 각 호"로 한다. 제6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2조의9(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)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,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수 있다.

제95조의3제2항 중 "법 제67조의2"를 "법 제67조의3" 으로 한다.

제95조의8 중 "법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"을 "법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" 로한다.

제120조의3제1항 및 제120조의7제1항 중 "양육비채무자"를 "미성년자인 자녀"로 한다.

제120조의4제1호 중 "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"을 "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, 미성년자인 자녀"로 한다.

제120조의8제1호 및 제120조의10제1호의 "피신청인과 그 대리인"을 "피신청인과 그 대리인, 미성년자인 자녀"로 한다.

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1조(이행명령의 관할) ① 다음 각 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 다만,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1. 법 제64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

의무

- 2. 법 제64조제1항제2호·제3호의 의무
- ② 제1항의 이행명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 명령 사건은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 다만,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도 적용한다.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조의2(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
	실조사 등의 촉탁 등)
	① 재판장, 조정장, 조정담당판사
	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
	원에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
	른 조치를 촉탁할 수 있다.
	② 제1항의 촉탁을 받은 가정법원
	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촉
	탁받은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
	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제12조의2(상담 권고)	제12조의2(상담 권고)
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다른 가
	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
	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
	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으로 하여
	금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
	<u>수 있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제12조의3(전문가 등의 자문)
	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
	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
	신건강의학과의사·심리학자·아동학

제23조(증거조사 등)

- ① (생략)
- 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. 있다.
- ③ 제2항의 촉탁을 받은 가정법원 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촉탁 받은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 ④ (생 략)

<신 설>

제5()조(처분의 취소)

사건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 하게 된 때 또는 그 사망이 분명하

자.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 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 을 수 있다.

제23조(증거조사 등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가정법원은 사실조사 또는 증거 ② 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
  - ③ <삭 제>
  - ④ (현행과 같음)

제49조의2(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) ①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 재자의 생사 여부, 재산관리의 가 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 다.

②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 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제50조(처분의 취소)

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에는 ----- 실종선고가 있는 때

가정법원은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 또는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 있지 아니한 때-----분을 취소하여야 한다.

제62조(입양허가의 절차 등)

- ①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양자가 될 사람
- 2. 양부모가 될 사람
- 3.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
- 4. 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
- 5.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 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 의 사람
- 6.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 인
- 7.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② 제1항의 심리검사에 관한 비용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법」 제116조, 「민사소송규칙」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 제19조, 제20조의 규정을, 예납하

제62조(심리검사의 촉탁)

① 재판장 또는 가사조사관은 입 양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, 심리검사전문가 등 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심리 검사를 촉탁할 수 있다.

의 예납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

청장에게 그 소득, 재산, 생활실태, 여야 할 비용의 범위와 액 및 그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, 입양의 동기 및 그 밖의 사정에 대한 조사 를 촉탁할 수 있다.

③ 가정법원은 국가경찰관서의 장 에게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 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| ④ <삭 제> 양육능력과 관련한 질병이나 심신 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의료 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진료기록 또는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의 조사 ⑤ 〈삭 제〉 촉탁,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조 회 요청 및 제4항에 따른 진료기록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 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.

제62조의8(준용규정)

- ① (생략)
- ②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

지급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비용 법」 및 「민사소송비용규칙」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.

③ <삭 제>

제62조의8(준용규정)

- ① (현행과 같음)

및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제62조의5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친양자 입양"은 "입양"으로, "제62조의3"은 "제62조제1항 각 호"로 본다. ③ (생략)

<신 설>

제95조의3(재산명시명령)

- ① (생략)

법 제45조의8제1항 각 호
③ (현행과 같음)
제62조의9(미성년자 양육에 관한
교육 등)
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
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
는 심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
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미
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
하거나 입양기관, 사회복지기관 등
에서 실시하는 미성년자 양육을
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
있다.
제95조의3(재산명시명령)
① (현행과 같음)
②

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하다. ③ ~ ⑤ (생 략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95조의8(과태료사건의 관할) 제95조의8(과태료사건의 관할) 법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-법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명시명령, 재산 조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. 제120조의3(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제120조의3(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) 관할) ① 법 제63조의2 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 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년자인 자녀----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120조의4(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 제120조의4(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 청의 방식) 청의 방식)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 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. 1. 양육비채권자・양육비채무자・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 의 표시 인, 미성년자인 자녀----. 2. ~ 4. (생 략) 2. ~ 4. (현행과 같음) 제120조의7(신청에 의한 담보제공 제120조의7(신청에 의한 담보제공 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) 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) ① 법 제63조의3제2항 및 제4항 에

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 -----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 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 워의 전속관할로 한다.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 할로 한다. 제120조의8(담보제공의 신청)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채무자 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 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1. 신청인,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. ~ 4. (생 략) 제120조의10(일시금지급의 신청)

제120조의10(일시금지급의 신청) 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 면으로 하여야 한다.

- 1. 신청인, <u>피신청인과 그 대리인</u>의 표시
- 2. ~ 4. (생 략) 제121조(이행명령의 관할)

<u>미성년자인 자녀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20조의8(담보제공의 신청)
1 <u>피신청인과 그 대리인,</u>
미성년자인 자녀
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120조의10(일시금지급의 신청)
1 <u>피신청인과 그 대리인,</u>
미성년자인 자녀
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121조(이행명령의 관할)

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에 관한 사건은 그 의무이행을 명한 판결, 심판, 조정을 한 가정법원(고등법원이 판결,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심 가정법원)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법원 소재지의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<u> <신 설></u>

① 다음 각 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 다만,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- 1. 법 제64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 육비 지급의무
- 2. 법 제64조제1항제2호·제3호의의무
- ② 제1항의 이행명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 다만,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-1609